#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7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석기·김형동

정운천 · 김용판 · 황보승희

윤창현 · 이철규 · 이종배

박대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,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(안 제12조 제1호의3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3. 수목원·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	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
제한) ① (생 략)	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1. · 1의2. (생 략)	1.・1의2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1의3. 수목원·정원과 그 안에
	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
	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
	형질변경
2. ~ 9. (생 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~ ⑪ (생 략)	② ~ ① (현행과 같음)